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3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주진우·박준태·김 건
신동욱·유용원·박상웅
추경호·조배숙·김승수
김도읍·유상범·김성원
김소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행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미수라 하더라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등록정보 공개 대상은 주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에 한정되어 있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유죄 확정자(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전력이 지역사회에 적시에 경고·통지되지 못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 달성에도 한

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전력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력과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을 포함한 다)를 저지른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	-----		
	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	-----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	-----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	-----		
	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을		
		<u>포함한다)를 저지른 자</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